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최수진 · 조정훈 · 김재섭
조지연 · 박준태 · 고동진
한지아 · 박충권 · 김위상
구자근 · 이상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별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21조제2호”를 “제2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 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4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요청한 조치나 협력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방사선 기기를 사용한 자 또는 설계승인이 면제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 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5.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 제19조제3항
(제29조 · 제34조 · 제39조의3
· 제44조 · 제51조 · 제62조 ·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0조
제1항 단서 · 제28조제1항 단
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 제30조제1항
단서 · 제30조의2제1항 단서 ·
제31조제1항 · 제33조 · 제35
조제3항 단서 · 제39조의2 · 제
39조의4제3항 단서 · 제42조제
1항 단서 · 제43조(제51조 · 제
62조 · 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5조제1항 단서 · 제52조제1
항 ·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
은 조 제2항 ·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 제54조제2항 · 제60
조제1항 단서 · 제63조제1항
단서 · 제68조의3제1항 단서 ·
제68조의4제1항 단서 · 제71조
· 제76조제1항 단서 · 제77조
의2제1항 단서 ·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 · 제50조제1항
및 제3항 · 제52조제2항 · 제53
조의3제4항 및 제5항 · 제59조
제1항 및 제3항 · 제59조의2제
7항 · 제61조 · 제68조제2항 ·
제70조제3항 및 제4항 · 제72
조 · 제73조 · 제74조제1항 ·
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5조(제
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제39조 · 제39조의8
· 제49조 · 제52조제4항 · 제5
8조 · 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제42조제1항 후단 · 제60
조제1항 후단 · 제76조제1항
후단 · 제77조의2제1항 후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6. (생 략)

7.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현행 제6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신 설>

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요청한 조치나 협력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
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
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
다), 제52조제1항, 제53조제1
항의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
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
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
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
항,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2
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
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
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방사선 기기를 사용한 자 또는 설계승인이 면제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5.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
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

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

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
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

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

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